

Information



** 석면·위험기계 취급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된다!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석면,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세척제·탈지제로 주로 사용되며, 두통·현기증·알레르기 반응·간장 이상, 마비 등을 유발함)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장 내 노출농도 준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리프트 등 18종의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발생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한편,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 조사

- 노동부, 1일부터 전국 반도체업체 13개사 대상 실시 -

반도체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최근 반도체를 생산하는 S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2월 한 달 동안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전국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 반도체 업체별(원·하청)로 재직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연도별, 직종별, 연령별, 성별 구성 현황 ▲ 주요 화학물질 취급현황 ▲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현황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 백혈병 발생 현황 등이다.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2008년 1분기 산업재해예방 지역협의회 개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관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산업재해감소목표·대책수립 및 재해예방기관 간 상호 정보교환과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8년 1분기 산업재해예방 지역협의회를 지난 1.31(목)에 개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업안전과장 외 근로감독관 5명, 관내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경희대학교부속병원 산업의학센터, 관내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의체 회장 등 16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7년도 재해현황을 분석·설명하고 월별 및 누적월별 산업재해감소목표 달성실적을 매월 재해예방단체별로 평가·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글로벌화!**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 시,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이 비준되었다.

또, 노사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 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87호)도 비준되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2건의 ILO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기탁,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준절차를 마친 두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비준대상 협약 75개(전체 협약 수 188개) 중 24개로 늘어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비준대상 협약 13개 중 4개가 비준되었다.

1983년에 채택되어 2008년 1월 현재 50개국이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협약(155호)은 국내 상황과 관행에 따라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형성하여 이행하고,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의 안전조치 및 점검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에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준을 하는 협약으로서, 노사대표기구와 협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재예방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하여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증진시키는 한편, 산업재해예방 문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대회인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올해 6월 29일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번 협약비준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187호 협약은 2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므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비준하여 협약 발효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날씨가 풀릴 때, 안전의식은 더욱 조여야 합니다!**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Guide Line」이 보급된다.

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전국 800여 개 건설현장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토사붕괴등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인화성물질 관리실태등 화재예방 조치, ▲추락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중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Guide Line」을 보급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